



호텔이용 할인 협약서

한국대학교육협의회(이하 '대교협')과 대교개발(주) 서울교육문화회관(이하 '교육문화회관')은 '대교협'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한 "교육문화회관"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 1 조 (목 적)

본 협약은 '대교협'과 '교육문화회관'의 상호 협조와 대교협이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 상)

'교육문화회관'을 이용하는 '대교협'의 고객은 대교협과 회원으로 등록된 단체의 행사에 한하며 이용시설은 서울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.

제 3 조 ('교육문화회관'의 서비스)

- ① '대교협'의 회원이 '교육문화회관'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을 제공한다.

○ 할인 내역

구 분	할 인 율
객 실	40% ~ 50%
식 음 료	10%(뷔페식당, 로비라운지, 제과)
사 우 나	30%(투숙객 50%)
회 의 장	탄력적 적용

- ② '대교협'과 '교육문화회관'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상기 제3조 1항에서 정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 4 조 (예약 및 취소)

- ① '대교협'이 호텔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'교육문화회관'의 판촉예약실을 통하여 예약한다.
- ② 예약을 취소할 경우 '대교협'은 일주일전까지 판촉예약실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상호 협조)

본 협약과 관련하여 '대교협'과 '교육문화회관'은 상호간에 협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'대교협'이 '교육문화회관'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호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.

제 6 조 (정보유출 금지)

본 협약에 관계된 '대교협'의 회원에 대한 정보는 본 협약에 의한 목적 외에 유출할 수 없다

제 7 조 (변 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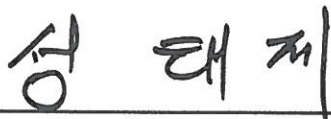
본 협약 이행 시 협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1개월 전까지 서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협약 기간)

- ① 본 협약기간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1년으로 한다.
- ② 쌍방이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만료 1개월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 단,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매 1년씩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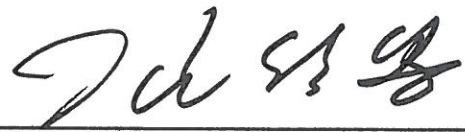
본 협약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'대교협'과 '교육문화회관'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0. 10. 25.



(사) 한국대학교육협의회

사무총장 성 태 제



대교개발(주) 서울교육문화회관

대표이사 사장 김 석 봉